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0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3. 2. 16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1. 27.
- 회부일 : 2023. 1. 31. (의안번호 : 23-2)

2. 제안이유

-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문 마련 및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 관련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“관광버스” 추가 (안 제5조)
- 나.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(안 제5조의5)
- 다.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명확화로 주차요금 산정에 따른 혼선 방지(안 별표 1 제15호)

4. 관계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
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
 - 「주차장법」 제9조 및 제14조(노상·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문 마련 및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- 안 제5조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 관련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“관광버스” 추가하는 내용임.
- 안 제5조의5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안 별표 1 제15호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명확화로 주차요금 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임.

나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버스 도심 속 불법주차방지, 세외수입 증가의 효과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주차장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버스 주차구획선 확정시 주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여 버스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